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16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지원 및 서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0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을 개관하여 서울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발굴·보육·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나.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대행기간이 '26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프라자
- 규모: 전용면적 2,887.4㎡, 지상 1~7층
- 공간현황: 보육공간(30실), 세미나실,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창업센터 동작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3년('27. 1. 1.~'29. 12. 31.)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27년 소요예산(안): 1,107백만원(민간위탁금)

다. 위탁사무

-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세부 운영 방안 수립·시행
-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육성 및 지원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서울창업센터 동작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안전 점검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市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2. 9. 스페이스살림 여성창업 지원 기능 이관(여성가족실→경제실)
 - '22.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대행 협약 체결(市-SBA)
 - '23. 11. 서울창업센터 동작 리모델링('23. 8.~10.) 및 재개관
 - '24.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SBA 대행, 1년 단위 협약)

- '25. 4. 서울창업센터 동작 특화사업 강화 방안 수립

※ 특화 방향 : 중장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기술창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창업지원시설 간 운영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관리 체계 개선

※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등 市 창업지원시설 10개 중 7개 민간위탁 추진

- 사업 운영 안정화에 따른 민간 창업 전문성 기반 운영방식으로 전환

- 민간의 경쟁원리 활용을 통해 성과 중심의 능률적 운영으로 전환

- 급변하는 창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6. 5. 7.)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7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오선숙(☎ 2133-4876)

김가영(☎ 2133-4761)